

#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산업경제위원회  
2003. 5. 26.

## 1. 심 사 경 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3년 5월 6일

· 회부일자 : 2003년 5월 6일

다. 상정 일자

○ 제213회 임시회

·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2003. 5. 26) 상정, 질의답변,  
수정 의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통상국장 박 경 국)

가. 제안 이유

-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자금 등 수시로 자금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결정해야 하는 경우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조문 개정

-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에위한특별조치법”을  
⇒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함

○ 용자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대상금액 및 용자금액을 결정하던 것을 ⇒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 등 수시로 지원·결정해야 하는 자금의 경우 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 용 회)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금을 지원하던 것을 용자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내용과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개정된 법령의 문구를 조정하는 조례로

- 본 조례 제2조 3호의 구조개선지원계획의 정의에서도 개정된 법령으로 문구가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문구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자금 등 수시로 자금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결정해야 하는 경우에 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자금의 판단기준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생 략 ”

6. 심 사 결 과 : “ 수정 가결 ”

7.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 없 음 ”

9. 별 칙

- ◎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동의
- ◎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 ◎ 대비표

##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7

제출연월일 : 2003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 제안이유

-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지원자금 등 수시로 자금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결정해야 하는 경우 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관계법령 변경

-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에위한특별조치법”을 ⇒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함

#### ○ 용자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대상금액 및 용자금액을 결정하던 것을 ⇒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지원자금등 수시로 지원·결정해야 하는 자금의 경우 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

의안전문 : 따로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12조중 “ 다만 현지 실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를  
“다만,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지원자금 등 수시로 자금지원신청을 받아 지원·  
결정해야하는 경우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자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 □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3조(구조개선지원계획 등) ①정부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규모·경영기법 또는 생산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의 법인전환·기업의 합병·공동사업·사업전환·사업장의 이전·경영합리화 등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④(생략)

### □ 중소기업청지시(중소기업청 소기55478-467호 '02. 12. 26)

“자금지원을 결정함에 있어 용자심의위원회 운영 원칙적으로 금지, 단 정책결정이나 심층검토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

##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동의

제출년월일 : 2003. 5. 26

제 출 자 : 정 상 혁 의원

## 1. 수정이유

- 조례에 명시된 근거법령의 법 명칭과 금번 개정된 법령중 미개정된 법령을 수정하고 근거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삭제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재단명칭변경에 따른 재단 명칭의 수정과 일부 업무 이관에 따른 주무관청을 수정하려는 것임

## 2. 주요 골자

- 조례 제1조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조례 제2조 제3호의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에위한특별조치법”을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 조례 제2조 제4호의 “산업자원부예”를 “중소기업청장에게”로 한다.
- 조례 제2조 제7호의 “시장재개발사업자라함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에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재개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를 삭제한다.
- 조례 제2조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는 각각 제2조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로 한다.
- 조례 제5조 제3항 “산업자원부장관과”를 “중소기업청장과”로 한다.
- 조례 제13조 제3항의 “충북신용보증조합이사장”을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으로 한다.
- 조례 제17조 제2항 “산업자원부장관에게”를 “중소기업청장에게”로 한다.

##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 제1조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조례 제2조 제3호의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에위한특별조치법”을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조례 제2조 제4호의 “산업자원부”를 “중소기업청장에게”로 한다.

조례 제2조 제7호의 “시장재개발사업자라함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에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재개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를 삭제한다.

조례 제2조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는 각각 제2조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로 한다.

조례 제5조 제3항의 “산업자원부장관과”를 “중소기업청장과”로 한다.

조례 제13조 제3항의 “충북신용보증조합이사장”을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으로 한다.

조례 제17조 제2항의 “산업자원부장관에게”를 “중소기업청장에게”로 한다.